

안전한 식의약, 건강한 국민, 행복한 사회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화장품 허위·과대광고 예방을 위한 홍보 협조 요청

1. 화장품 안전관리에 협조해 주시는 귀 협회에 감사드립니다.

2. 우리 청에서는 사전 예방적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해 관내 화장품 제조업체 및 제조판매업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, 2013년 정기점검 결과 「화장품법」 제13조(부당한 표시·광고 행위 등의 금지)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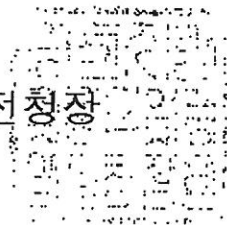
3. 이에 따라 우리 청은 이러한 위반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주요 위반사례를 알려드리니, 귀 협회에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원사(화장품 제조업체 및 제조판매업체)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위반 유형	주요 위반 사례	행정 처분 기준
의약품 오인 표시·광고	○ 피부재생, 세포재생 등 표현 ○ 질병의 진단·치료·경감·치치·예방 표현 (아토피, 여드름, 항균·항염 등)	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(광고)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(표시)
기능성화장품 오인 표시·광고	○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으로 보고된 제품이나 미백 효과가 있다는 표현 ○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주름개선, 미백 등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	
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·광고	○ 일반화장품의 '식약청 인증 제품' 표현	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(광고)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(표시)
기타	○ 전문가 집단 또는 전문가관이 이를 지정·공인·추천·지도·연구·개발하고 있다는 표현	

※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정보자료>법령자료>지침·가이드라인·해설서>「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가이드라인」 참조. 끝.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수신자 대한화장품협회,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



주무관	이성현	주무관	이경욱	의료제품안전	전결 2013. 7. 26.
				과장	김기만

협조자

시행 의료제품안전과-5267 (2013. 7. 26.) 접수

우 427-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713호(중앙동, / http://gyeongin.mfds.go.kr 정부과천청사)

전화번호 02-2110-8097 팩스번호 02-2110-0810 / arang1004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친절·청렴 행정, 식약처의 자존심입니다. 부조리신고센터(www.mfds.go.kr)